



일 잘하는 실력 국회

입법·정책보고서

2019. 12.

제39호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박명희(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2019. 12. 27.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동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내 용
주제 선정	2019. 1. 21.
초고 작성기간	2019. 9.1 - 11.28
초안 검토	유웅조 정치행정조사심의관 이승현 외교안보팀 팀장직무대리
실무위원회 검토	2019년 12 월 3 일(화) 오후 3시 - 검토위원: 조기열 정치행정조사실장 유웅조 정치행정조사심의관 유인규 팀장 장영환 팀장 박영원 팀장
외부전문가 자문	1. 전문가: 조양현(국립외교원) 2. 요청일: 2019.12.3 3. 답변일: 2018.12.4
간행물 심의위원회 의결	2019년 12월 12일(목) 오후 10시 - 위원장: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 위 원: 이신우 경제산업조사실장 이복우 기획관리관 정경윤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요 약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일본은 외교안보 정책결정과정에서 총리 관저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13년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国家安全保障會議: National Security Council)가 신설된 후, 「국가안전보장전략」 발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평화안전법제」의 제·개정, 「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이 추진되는 등 안보정책에서의 변화가 현저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발표된 일본의 주요 안보관련 문건 및 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일본 방위비의 증가, 장비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위대의 활동지역에서 지리적인 한계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미일동맹의 질적·양적 강화가 이루어졌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의 발표로 일본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문서 체계와 동일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미일 간 방위협력의 지리적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다. 영역 면에서도 육해공 등 기존의 미일전략협력 영역에 더하여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협력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동맹조정협의체의 설치를 통하여 평시부터 비상시까지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하에 일본의 안전보장 협력국의 범위가 기존 한국, 호주, 중국, 러시아 등에서부터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다.

넷째, 일본의 안보정책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견제가 뚜렷해지고 있는 한편, 중국과 안전보장대화 추진 등 방위협력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뚜렷해지고 있는 일본의 방위역량 강화와 안보분야에서의 역할 확대 등 급변하고 있는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최근 일본의 방위역량 강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안으로 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으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후방지원 체제의 구축 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의 안보정책 방향 및 대일안보협력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일본 안보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담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한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의 양면적 성격을 고려하되, 이것이 타국의 위협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일본의 설명 책임 및 투명성 확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양국의 정부 및 의회, 전문가 간 다양한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차원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된 '한일의회 미래대화'의 의제로 한일 양국의 안보정책 및 방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발족한 한일의회외교포럼 등을 통한 상시적 대화채널의 확보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한일 간 대북억지력 유지를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 하에 안전보장 협

력국의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여러 안보정책 문건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안보협력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일본의 안보환경 인식에서 한반도가 제외된 경우는 없으며,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양국에게 있어 공통된 위협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대북정책의 기초에는 차이가 있으나, 양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안보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의 과거사와 안보연계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는 갈등사안이 많고 해결이 쉽지 않으며, 점화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일본의 과거사 사안에 대한 안보 연계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면서 안보 문제는 안보 논리로 다루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안보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복합적·중층적 협력체고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미일동맹의 협력범위가 우주·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고, 미래전(戰)에 대비한 미일동맹의 기술·협력 수준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역내 다양한 안보위협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 및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층적인 안보협력을 강화함에 있어 국회차원에서는 2019년 6월 출범한 12개 의회외교포럼을 활용하여 각국 의회 간 지식·정보 및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차 례

□ 요약

I. 서론 / 1

II. 아베내각의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 정비 현황 / 4

- 1.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戰略)」 책정 4
- 2. 「미일방위협력지침(日米防衛協力の指針)」 개정 7
- 3.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의 정비 10
- 4. 「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 13

III.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 분석 / 19

- 1. 총괄적 분석 19
- 2. 주요 쟁점별 분석 21
 - 가. 방위비 증가현황 21
 - 나. 군사대국화 가능성 24
 - 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27
 - 라. 전수방위 원칙의 실질적 수정 28

IV.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에 따른 시사점 / 31

- 1. 현(現) 한일안보협력 현황 31
- 2. 시사점 38
 - 가. 향후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의 재정립 38

나. 일본 안보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담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39
다. 대북억지력 유지를 위한 협력강화	40
라. 일본의 과거사 사안의 안보연계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41
마. 안보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중층적 안보협력 방안 모색	41

V. 결론 / 43

□ 참고문헌 / 47

표 차례

[표 1]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일본 정부 견해 비교	10
[표 2] 「방위대강」 비교(2013년, 2018년)	14
[표 3]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주요내용	32

그림 차례

[그림 1] 미국과 일본의 안보전략 체계	6
[그림 2] 일본의 방위예산액 추이(2009-2019)	21
[그림 3] 일본 방위비 중 대외군사판매(FMS) 예산액 추이 (2009-2019)	24
[그림 4] 자위대의 방위력에 대한 여론	26
[그림 5] 미국 이외 방위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37

I. 서론

- 2019년 11월 20일 아베(安倍晋三)총리는 일본 역사상 최장의 재임기간 기록을 보유한 총리가 됨. 아베총리는 2006년 제1차 내각 출범이후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정권의 목표로 제시하고, 전 분야에 걸친 변화를 시도해옴
-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의 전후체제’란 평화헌법과 미일동맹에 근거하여 안보는 미일동맹에 의존하고, 경제적 번영에 치중해 온 것을 의미함. 그 결과 일본의 외교가 소극적이며, 자주적인 국가전략의 수립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일본 보수진영의 평가임
- 탈냉전 이후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국가전략의 수립을 위한 내부적인 시도들이 있어왔는데, 2012년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 이후 정치·외교안보·역사 전 영역에 걸쳐 체계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아베총리는 2013년 1월 소신표명 연설에서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 등 주권에 대한 도발이 지속되는 안전보장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이며, 전 세계를 조망하고,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에 입각하여 전략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을 밝힘¹⁾
- 2013년 9월 아베총리는 스가(菅義偉) 관방장관(국가안전보장강화담당상), 기시다(岸田文雄)외무대신, 오노데라(小野寺五典) 방위대신에게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의 책정을 지시하고 이를 논의하는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를 설치함
- 2013년 12월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国家安全保障

1) 第183 回国会参议院本会議録 (2013年 1月 28日)

会議: National Security Council)를 설치하고, 외교안보 정책결정과정에서 총리관저의 영향력을 강화함

- 내각총리대신이 의장이며, 내각관방·외무·국방 등 4개 장관 회의를 핵심으로 함. 확대회의에는 재무·총무·경제산업·국토교통·국가공안위원회 등 9개 부처 장관이 포함됨

□ 이후 안보정책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짐. 2012년 12월 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제·개정된 안보관련 문건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12월 17일 일본 최초의 외교안보의 포괄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戰略)」이 발표됨
- 2014년 7월 각의결정을 통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였고, 2015년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반영하여 안보관련 법제를 개정함
- 2015년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군사협력의 지침인 「미일방위협력지침(日米防衛協力の指針,ガイドライン)」을 개정함
- 2013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방침인 「방위계획대강(防衛計画の大綱)」(이하 ‘방위대강’)과 방위력의 구체적인 정비계획인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衛力整備計画)」(이하 ‘중기방’)을 개정함²⁾
- 「방위대강」은 1976년 처음 책정된 이래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 옴. 「방위대강」은 향후 약 10년을 염두에 두고 책정되는 문서이나 최근 5년 만에 개정됨

2)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戰略)」, 「방위대강」, 「중기방」은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핵심문건임. 2013년 발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戰略)」은 일본외교안보전략의 포괄적 지침으로서 최상위문서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방침인 「방위대강」과 구체적인 방위품 조달 및 부대편성계획인 「중기방」이 개정됨

- 이러한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는 우리의 안보정책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만큼 본 보고서는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발표된 주요 안보관련 문건 및 법제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법제 개정 현황을 검토함
 - 둘째,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주요 특징과 쟁점을 분석함
 - 셋째, 한일안보협력의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함

II. 아베내각의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 정비 현황

1.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

- 일본 정부는 2013년 12월 17일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각의를 개최하고 「국가안보전략」을 결정·발표함
-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외교·안전보장정책 전반에 관한 전략을 담은 포괄적 문서로서 대략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음
 -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책정의 취지’,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이념’, ‘안전보장 환경과 국가안전보장의 과제’, ‘전략적 어프로치’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
 - 첫째,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이념으로서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지속하고, 국제협조주의에 근거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일본 및 아태지역의 평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밝힘³⁾
 - 둘째, 일본의 국익으로서 일본의 주권 및 독립의 유지,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 및 법에 기반 한 국제질서 유지를 강조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역지력의 강화 및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방

3) 第185回国会衆議院會議録第4号4頁(2013年10月25日)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아베총리는 근년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한층 악화되어 대량파기병기 및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증가, 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 하에서 일본만이 평화를 지킬 수는 없고, 일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국제협조주의에 근거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지금까지 이상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지, 미일동맹 강화 및 역내 파트너와의 협력강화, 보편적 가치 및 법에 기반 한 국제질서의 강화를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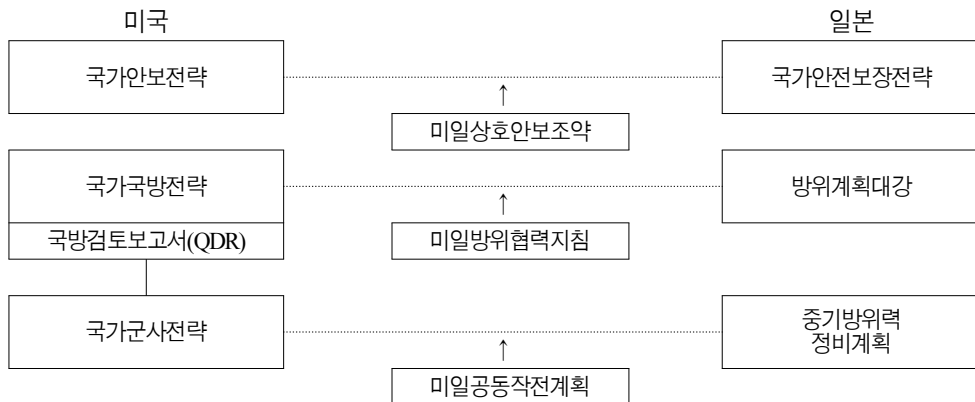
- 셋째,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상의 과제로는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태두로 인한 파워밸런스의 변화, 국가와 비국가주체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변화,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개발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해양·우주공간·사이버 공간 등의 국제공공재에 대한 과제 등이 제시됨
 - 지역적으로는 북한에 의한 군사력 증강과 도발행위가 아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지목함. 또한 중국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 해공영역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본 및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 되고 있다고 기술함
- 넷째, 국가안전보장상의 전략적 접근으로서 1) 일본자체의 능력강화, 2) 미일동맹 강화, 3) 국제사회 파트너와의 협력강화, 4)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기여를 제시함
 - 일본의 종합적 방위체제 구축, 해양안전보장확보, 사이버안보 등을 강화하고, 방위장비품의 활용 등에 의한 국제공헌을 적극적으로 관여해 갈 것임을 밝힘
 - 나아가 기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원칙의 제정방침을 내세움⁴⁾
 - 미일동맹은 일본 국가안전보장의 기축이며, 미일간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미일의 역할, 임무, 능력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미일방위협

4)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총리가 국회답변에서 공산국가, 유엔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자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를 표명한 것에서 유래함. 한편, 무기수출 3원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안보환경 변화 및 다국 간 무기 공동개발의 필요가 생겼을 때 예외조치를 취해 왔음

력의 지침」을 수정할 것임을 밝힘

- 미일동맹에 대하여 국제사회 파트너와의 협력강화를 강조하고, 한국·호주·아세안 및 인도 등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강화하는 한편, 군사력의 강화에 대해서는 개방성, 투명성 향상을 촉진하고 힘에 의한 현상변경 등에 대해서 중국 측에 자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피력함
 - 국제협조주의에 근거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유엔외교의 강화, 법의 지배강화, 군축·비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함
- 「국가안전보장전략」의 발표로 일본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문서체계와 동일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미국과 일본의 안보전략 체계⁵⁾



-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문서체계는 백악관이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방성이 발표하는 국가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5) 자료: 권태환 「최근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한국국가전략』, 제8호, 2018. p.84 참고로 필자 수정

Strategy), 합참이 발표하는 국가군사전략서(National Military Strategy)로 구성되며,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문서체계는 국가안보전략서,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임

2. 「미일방위협력지침(日米防衛協力の指針)」 개정

- 2015년 4월 27일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는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日米防衛協力の指針)」을 발표함
 -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양국에 특정 위협이 발생할 경우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각기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군사협력의 지침을 규정한 전략문서임
 - 1978년 미소 냉전체제가 지속되면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보다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제정됨. 1997년 탈냉전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등을 배경으로 1차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이루어짐
 - 2015년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1) 방위협력 및 지침의 목적, 2) 기본 전제, 3) 강화된 동맹의 조정, 4)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빈틈없는 확보, 5) 지역, 글로벌 평화를 위한 협력, 6) 우주 사이버공간에서의 노력, 7) 미일공동의 노력, 8) 검토 등 8개장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
 - 첫째, 「미일방위협력지침」의 목적은 평시부터 비상사태까지 일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함
 - 둘째, 일본 및 미국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은 각국의 헌법과 국내법령, 국가안보정책의 기본방침에 따라 이루어짐. 일본의 활동은 전수방위, 비핵 3원칙 등에 따름

- 셋째, 미일 양국은 새롭게 동맹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평시부터 긴급사태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위대와 미군활동에 관한 정책 및 운영상의 조정을 강화함. 공동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공유 등 운영 면에서의 조정을 강화함
- 넷째,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동맹은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에 대처함
 - 해당 사태는 지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며, 미일 양국정부는 동맹조정협의체를 활용하면서 비전투원의 대피, 수색 및 구난조치 등을 시행
- 다섯째, 일본에 무력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양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정보공유 및 정책적 협의를 강화함
 -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양국은 신속하게 무력공격을 제거함
 - 특히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는 일본 도서를 포함한 육상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 및 수륙양용부대를 통한 공동작전의 실시가 명기됨
- 여섯째, 미일 양국이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는 경우 주권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국제법 및 헌법·국내법에 따라 무력행사를 동반하는 활동을 결정함
- 일곱째, 양국정부는 안전보장 측면에서의 우주공간을 인식하고 평화적이고 안전한 우주의 이용을 위한 연계 강화, 사이버 공간에 대한 협력을 추진함
 - 특히, 일본에 사이버 사안이 발생하면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처하고 미국이 지원하도록 함

□ 특징

- 19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이 한반도 유사사태 등 일본 열도 주변 사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2015년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대미

후방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지리적인 것에 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미일협력의 범위 제한을 삭제함

- 이는 자위대가 전 세계적으로 미군에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함. 또한 영역 면에서도 육해공 등 기존의 미일전략협력의 영역에 더하여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협력범위가 확대됨
- 미일이 수행하는 방위협력의 유형은 평시협력,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이외 '일본 이외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대처'가 추가됨
-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 함선의 보호 작전에 참가하는 일본의 자위대의 한국 영역 진입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2015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는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 시 해당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음
-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가 한층 진행된 것으로 관찰됨. 확대된 방위협력을 위해 평시에 동맹조정 협의체를 설치하고,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미일공동훈련이 실시됨. 또한 양국 간 군사장비 분야의 기술협력과 정보협력 등이 강화되고 있음

3.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의 정비

- 2014년 7월 1일 아베 총리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여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 무너질 명백한 위험이 있는 존립위기사태의 경우’, ‘일본의 존립을 온전하게 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정한 수단이 없을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무력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함

[표 1]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일본 정부 견해 비교

1972년 정부 견해	2014년 7월 정부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헌법 하에서 무력행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일본에 대한 급박, 부정확 침해에 대처하는 것에 한정됨 -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저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임. 향후 타국에 대하여 발생하고 있는 무력공격에 대해서도 그 목적, 규모, 양상 등에 따라서는 일본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본의 존립을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 필요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종래의 정부견해의 기본적인 논리에 근거한 자위를 위한 조치로서 헌법상 용인된다고 판단함

자료: 沓脱和人, 「集团的自衛權の行使容認をめぐる国会論議」, 『立法と調査』. 395号, 2015, p.33를 바탕으로 필자수정

-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헌장 제51조에 규정된 것으로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이 직접 받지 않는 경우에도 자국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여 군사력을 갖고 저지하는 권리임

- 유엔헌장에 따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현행 헌법 하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음

- 2014년 7월 각의결정에 따라 한정적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을 포함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平和安全法制整備法)」 및 「국제평화지원법(國際平和支援法)」이 2015년 5월 15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동 년 9월 19일 중의원 통과,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됨

- 「평화안전법제정비법」은 10개 법의 개정이 포함된 일괄개정법이며, 「국제평화지원법」은 신규 제정법임. 일본에서는 이 두 법을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로 칭하고 있음⁶⁾

-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의 주요 내용

- 첫째, 존립위기사태의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의 조치로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됨

- 존립위기사태는 일본에 대한 공격 뿐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6) 「평화안전법제정비법」에 포함되어 일부 개정된 10개의 법은 「자위대법(自衛隊法)」, 「국제평화협력법(國際平和協力法)」, 「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重要影響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선박검사활동법(重要影響事態等に際して実施する船舶検査活動に関する法律)」, 「무력공격사태대처법(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における我が国の平和と独立並びに国及び国民の安全の確保に関する法律)」, 「미군 등 행동관련조치법(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におけるアメリカ合衆国等の軍隊の行動に伴い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특정공공시설이용법(武力攻撃事態等における特定公共施設等の利用に関する法律)」, 「해상운송규제법(武力攻撃事態及び存立危機事態における外国軍用品等の海上輸送の規制に関する法律)」, 「포로취급법(武力攻撃事態及び存立危機事態における捕虜等の取扱いに関する法律)」,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国家安全保障會議設置法」) 등임

타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및 행복추구의 권리가 근본으로부터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임

- 현행법에서는 일본의 무력행사는 일본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개별적 자위권의 차원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었음
- 둘째, 중요영향사태 하에서 미군과 여타 외국군에 대하여 탄약의 제공 및 전투작전 준비 중인 항공기의 급유 및 정비 등이 가능하게 됨
 - ‘중요영향사태’는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 무력공격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사태로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를 의미함
 - 또한 현행법상 일본 주변지역에서 허용되었던 자위대의 활동이 ‘중요영향사태’의 개념으로 지리적 한계가 없어졌으며, 종래 ‘후방지역’의 표현이 ‘현재 전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외에서는 활동이 가능하게 됨
- 셋째, ‘국제평화공동사태’에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유엔의 목적에 따라 공동 대처활동을 하며, 여기에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함
 -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하여 ‘국제평화공동사태’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외국군대에 대한 보급, 운송, 의료물품 및 탄약의 제공, 전투 작전준비중인 항공기 급유 및 정비 등이 가능하게 됨

□ 특징

- 집단적 자위권용인 각의 결정(2014년 7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2015년 4월), 안보법제정(2015년 9월) 이후 일본은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사태, 주변사태 이외 제3국에 무력공격이 가해져 일본의 존립에 위기를

- 미치는 경우에도 자위대의 군사력이 미국 및 기타 우방국들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게 됨
- 지리적인 측면에서 자위대의 활동지역이 ‘현재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일본의 안보법제 성립으로 미국에 있어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지역의 안보구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

4. 「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

- 「방위계획대강(防衛計画の大綱), 이하 방위대강」은 약 10년간의 안보정책의 기본지침이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中期防衛力整備計画), 이하 중기방」은 새로 책정된 「방위대강」에 근거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방위품 조달 계획 및 자위대의 병력편성 계획임

가. 「방위대강」의 주요 내용

- 「방위대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1995년, 2004년, 2010년, 2013년, 2018년 개정됨. 본래 「방위대강」은 약 10년간의 안보정책의 지침이나, 최근 급격한 안보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개정주기가 빨라지고 있음
- 「방위대강」은 1) 취지 및 일본의 안보환경, 2) 일본 방위의 기본방침, 3) 방위력 강화 우선사항, 4) 자위대 체제 등으로 구성됨
- 2013년과 2018년 「방위대강」에 나타난 일본 안보환경의 위협 및 기본방침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2] 「방위대강」 비교 (2013년, 2018년)

	2013년 방위대강	2018년 방위대강
안보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토 및 주권, 해양에서의 경제적 권익을 둘러싼 그레이존사태(평화도 유사시도 아닌)의 증가 - 북한의 핵실험.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 실현 가능성 고조 - 중국의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 해·공 영역 활동확대 영해침범,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 설정, 중국의 투명성을 결여한 군사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사이버·전자파 이용 하이브리드전 확대 - 중국의 투명성을 결여한 군사력강화, 해·공영역 활동확대,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 - 북한의 본질적 핵·미사일 능력의 변화 없음 - 저출산 고령화, 재정악화
기본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협조주의에 근거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각국과의 협력 관계를 확대·심화 - 자위력강화: 통합기동방위력 구축 - 한미일·미일호의 3국틀 협력관계 강화. 미국의 동맹국간 상호 협력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협조주의에 근거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각국과의 협력 관계를 확대·심화 - 자위력강화: 다차원통합방위력 구축 - 호주·인도·동남아·한국 등 타국과의 협력강화
우선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서지역 및 도서 방위태세강화, 방위력 정비 (해상자위대 도서방위태세 충실, 이지스시스템 탑재 호위함 도입) - 감시능력: 무인장비활용 및 주변해역 함정·항공기에 의한 상시감시 - 정보능력: 인공위성을 활용한 정보수집능력 강화, 사이버 공간 대응 능력 강화 - 운송능력: 민간운송력과의 연계 도모, 종합적 운송능력 향상(민간공항 및 항만도 자위대의 운용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활용 정보수집 능력 강화 및 우주공간 감시체제 구축 - 사이버 반격능력 구축 및 감시·복구 능력강화 - 전자파수집·분석능력강화 - STOV(L)기 도입 및 이즈모 개조활용 - 스탠드오프 방어능력 획득 종합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자위대정년상향조정, 퇴직자위관 및 여성활용, 무인화
자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자위대 통합사령부 신설 - 전 자위대 통합운용을 위해 각 자위대의 주요사령부에 육·해·공 자위관을 상호배치 - 도서 침공시 신속히 상륙, 탈환, 확보 가능하도록 본격적인 수륙양용작전능력 정비 위해 수륙양용작전부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자위대의 유연한 통합 활용 우주영역전문부대, 사이버방위부대, 탄도미사일방위부대 신설 등

7) 필자작성

- 첫째, 2013년 「방위대강」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협은 그레이존 사태(평화도 유사시도 아닌 상황)의 증가, 북한의 핵실험·핵무기의 성능고도화로 인한 위협의 증가, 중국의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 등임
 - 2018년 「방위대강」에서 기술된 안보위협은 우주, 사이버, 전자파 이용의 급증과 이를 활용한 하이브리드전의 확대, 중국 및 북한의 군사적 능력 강화, 일본 국내적 상황으로서 인구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재정악화임
 - 2013년은 구체적 국가의 위협이 북한, 중국 순이었으나, 2018년에는 중국, 북한 순으로 변화하였으며, 2018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등장한 것이 특징임
- 둘째, 일본의 방위정책의 기본방침은 자위대의 자위체제 강화, 미일동맹 강화, 타국과의 안전보장협력 강화임
 - 자위대의 자위체제 강화를 위해 2013년 「방위대강」은 ‘통합방위력강화’를 목표로 제시한 데 반해, 2018년 「방위대강」은 자위력 강화를 위해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 및 육·해·공 영역을 횡단하는 ‘다차원 통합 방위력 구축’을 통하여 개별 영역에서의 열세를 극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미일동맹 강화 부분에서 2013년 「방위대강」은 미국이 일본 및 아태지역에서의 관여를 유지·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한편, 2018년 「방위대강」은 미일동맹이 일본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기술함
 - 안전보장협력 강화를 위해 2013년 「방위대강」에서는 미일동맹 이외 한국, 호주, 중국,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언급함. 이에 반해 2018년 「방위대강」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호주, 인도, 동남아, 한국 순으로 협력을 언급함

- 특히 한국관련 기술에서 2013년 「방위대강」은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지지하는 한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추진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및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 향후 연계 기반의 확립을 도모함’을 언급함
- 셋째,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선사항으로 2013년 「방위대강」은 남서지역 및 도서 방위태세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2018년 「방위대강」은 우주를 활용한 정보수집 능력향상 및 감시체제 구축, 사이버 반격능력 구축 등을 제시함
- 기타 무인수중기(UUV)를 포함한 수중·수상능력 강화, 단거리이륙·수직착륙기(STOVL기) 도입, 스탠드오프(standoff) 방어능력 및 종합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헬기탑재 호위함 이즈모의 개조를 통한 STOVL기 운용 계획도 포함됨

나. 「중기방」의 주요 내용

- 「중기방」은 구체적인 방위품 조달 및 부대편성 계획으로서 「방위대강」의 내용에 따라 편성되며, 1) 기본 방침, 2) 기간부대의 변경, 3) 자위대의 능력강화를 위한 주요사업을 제시함
- 주요 내용
 - 첫째, 2013년 「중기방」은 자위력 강화의 기본 방침인 ‘통합기동방위력’을 구축하기 위해, 육상자위대 내 통합사령부신설, 각 자위대의 주요사령부에 육·해·공 자위관 상호배치, 도서침공에 대비한 수륙양용작전부대 신설을 제시함
 - 한편, 2018년 「중기방」은 ‘다차원통합방위력’ 구축을 목표로 사이버

방위부대 및 해상 수송부대 신설, 전자파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공유를 위한 전문부서 설치, 항공자위대에 우주영역 전문부대 및 무인기 부대 신설 등이 포함됨

- 둘째, 2013년 「중기방」은 냉전기 본토방어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중국을 염두에 둔 ‘낙도 방어’에 중점을 둬. 이에 따라, 전차 부대 감축, 수륙양용부대의 신설, 수륙양용자동차 및 운송기의 확충 등을 목표로 함
 - 2018년 「중기방」은 ‘다차원 통합방위력 구축’을 위해 우주상황 감시(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시스템 정비, 상대방 레이더의 무력화를 위한 전투기(F-15, F-35A)의 능력향상 등이 포함됨
- 셋째, 2013년 「중기방(2013-2018)」 예산은 24조 6,700억 엔이었으나, 2018년 「중기방」 예산은 27조 4,700억 엔으로서 2조 8,000억 엔이 증가한 것으로 중기방 중 최대 규모임

□ 2018년 개정된 「방위대강」 및 「중기방」의 특징

- 2013년 대강은 구체적인 안보의 위협이 북한, 중국 순이었으나, 2018년 대강에는 중국, 북한 순으로 변화하는 등 대 중국 견제가 뚜렷해짐
 - 2018년 「방위대강」은 중국의 위협은 강조하지만, 상호이해 및 신뢰관계의 증진, 다층적 대화, 중일 방위당국 간 해공연결메커니즘 구축 등을 통하여 중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 한편, 일본 안보환경에 대한 위협으로서 북한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이 「방위대강」 내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일본의 안전보장 협력국의 범위가 2018년 큰 폭으로 확대됨
 - 2013년 「방위대강」에서는 미일동맹 이외 한국, 호주, 중국, 러시아 등

과의 협력을 언급함. 2018년 「방위대강」에서는 미일동맹 이외 호주, 인도, 아세안, 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강화를 언급함⁸⁾

- 안전보장협력 강화 국가에서의 한국에 대한 우선순위가 변화함. 2013년 「방위대강」에서는 안전보장협력 강화국가로서 미일동맹에 이어 한국과의 협력강화를 우선적으로 언급한데 반해, 2018년 「방위대강」에서는 호주·인도·동남아시아·한국 순임
 - 일각에서는 일본에서의 한국의 안보적 중요성의 감소로 해석하고 있음
 - 하지만 일본의 안보환경 인식에서 한반도가 제외된 경우는 없으며,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양국에게 있어 공통된 위협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 일본은 「2011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불발 이후 상황에서도 2013년 「방위대강」에서 한국과의 GSOMIA 및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체결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한국의 안보적 중요성은 인지하나, 이후 한일관계의 악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은 우주 및 사이버공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위협과 전장 양상을 고려한 통합부대의 창설 등 새로운 위협·미래전장에 대한 대비태세에 주력 중이며, 정보공유 및 전문가 육성·도상연습 등 폭넓은 분야에서 미일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8) 특히 일본의 호주, 인도와의 관계 심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호주와의 관계는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항공자위대와 호주공군의 합동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내 일본과 인도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를 체결할 예정임(日本經濟新聞 2019年 11月8日)

Ⅲ.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 분석

1. 총괄적 분석

-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발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미일방위협력지침」, 「평화안전법제」, 「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의 문건을 검토한 결과, 최근 일본의 안보정책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2012년 이후 일본의 자체 방위력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자위대 활동지역의 한계가 사실상 없어짐
 - 집단적 자위권용인 각의 결정(2014년 7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2015년 4월), 안보법제성립(2015년 9월) 이후 제3국에 무력공격이 가해져 일본의 존립에 위기를 미치는 경우에도 자위대의 군사력이 미국 및 기타 우방국들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게 됨
 - 지리적인 측면에서 자위대의 활동지역이 ‘현재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됨
 - 둘째, 미일동맹의 질적·양적 강화가 이루어짐. 미일 간 방위협력의 지리적 제한이 없어졌으며, 영역 면에서도 육해공 등 기존의 미일전략협력 영역에 더하여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협력범위가 확대됨
 - 2015년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동맹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평시부터 긴급사태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위대와 미군활동에 관한 정책 및 운영상의 조정을 강화하도록 함
 - 또한, ‘대미후방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지리적인 것에 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미일협력의 범위 제한을 삭제함

- 셋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하에 일본의 안전보장 협력국의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안보협력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음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이 2018년 「방위대강」 내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미일동맹 이외 호주, 인도, 아세안, 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강화를 도모함
 - 한편, 일본의 안보환경 인식에서 한반도가 제외된 경우는 없으며,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양국에게 있어 공통된 위협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 넷째, 일본의 안보정책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견제가 뚜렷해지고 있는 한편, 중국과 안전보장대화 추진 등 방위협력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
 -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강화하는 한편, 군사력의 강화에 대해서는 개방성, 투명성 향상을 촉진하고 힘에 의한 현상변경 등에 대해서 중국 측에 자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피력함
 - 2018년 「방위대강」은 중국의 위협은 강조하지만, 상호이해 및 신뢰관계의 증진, 다층적 대화, 중일 방위당국 간 해공연결메커니즘 구축 등을 통하여 중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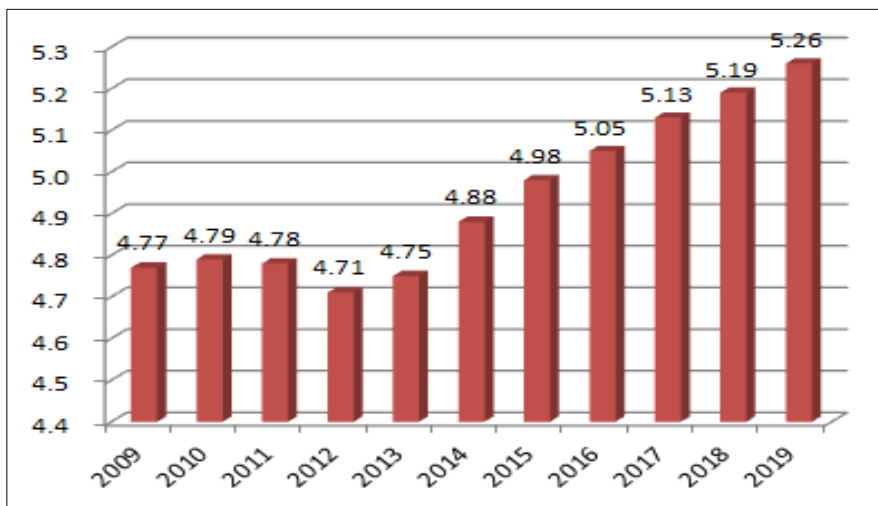
2. 주요 쟁점별 분석

가. 방위비 증가 현황

- 2012년 이전까지 일본의 방위비는 정체 혹은 점진적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일본의 방위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3년 11년 만에 방위비가 증액되었고, 이후 매년 증가를 거듭하고 있음
- 2019년 일본의 방위 예산은 5조 2,574억 엔이며, 최근 발표된 방위성의 2020년도 예산요구액은 5조 3,222억 엔으로서 과거 최대액수로서 연속 8년간 방위비가 증가하고 있음⁹⁾

[그림 2] 일본의 방위예산액 추이(2009-2019)

(단위: 조엔)



자료: 방위백서 각 년도 및 わが国の防衛と予算 (平成31年度概算要求の概要)

9) 読売新聞 2019年 9月 5日

- 2020년 예산의 특징으로는 우주 및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방위 체제 강화를 위하여 2020년 항공자위대에 우주감시전문부대를 신설하고, 육상자위대에 80명 규모의 전자전 부대를 신설함
 - 장비는 스텔스 전투기 F35B 6대 구입용 846억 엔, 호위함 이즈모의 항공 모함 수리비 31억 엔,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어쇼어 2기분의 미사일 발사대 비용 122억 엔 등이 계상됨¹⁰⁾
- 일본의 방위비는 1976년 11월 5일 각의에서 결정된 「당면의 방위력 정비에 대해서(当面の防衛力整備について)」에 따라 해당년도 국민총생산의 1%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1%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데, 2018년도 방위비는 GDP대비 0.875%, 2019년도는 0.884%임
 - 한편, 아베총리는 방위비를 기계적으로 GDP대비 1%라는 틀 내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¹¹⁾
 - 세계평화연구소가 2017년 1월 발표한 보고서는 보다 자립적인 방위력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GDP 대비 1.2%를 목표로 방위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힘¹²⁾
 - 자민당은 2018년 5월 「새로운 방위대강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위한 제언」을 발표함. 여기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해양안전보장을 도모하고, NATO가 GDP 2%의 방위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0) 日本經濟新聞 2019年 8月 31日

11) 丹下 綾, 「2019年度防衛関係費の概要 -新防衛大綱・新中期防初年度の防衛力整備-」, 『立法と調査』, 409号, p.101.

12)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70112/pl1701120041-n1.html>

- 트럼프(Donald John Trump)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정책에 대해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자체방위비의 증액이나 안보태세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¹³⁾
- 일본 방위연구소의 사다케 도모히코(佐竹知彦)는 트럼프행정부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미국 및 호주 등 다른 대미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¹⁴⁾
- 일본의 방위비가 GDP대비 2%로 확대되면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GDP 대비 방위비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방위예산 관련해서 국내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제2차 아베 내각 출범이후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의 급증부분임
- FMS는 미국이 「무기수출관리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근거하여 동맹국 등에 방위장비품 등을 조달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직접 가격을 정하고 정부 간 거래가 이루어짐
- 2011년 FMS 규모는 432억 엔이었으나 2019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7,103억 엔에 이룸으로써, 최근 10년간 16배가 증가함
- FMS는 군사기밀성이 높은 최신의 장비품을 조달할 수 있는 반면, 가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없고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내 방위산업 약

13) 요미우리신문이 2018년 12월 실시한 미일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응답자 중 미국을 신뢰한다 30%, 신뢰하지 않는다 55%, 대답할 수 없다 15%, 미국 응답자 중 일본을 신뢰한다 70%, 신뢰하지 않는다 24%, 대답할 수 없다 20%로 나타남(読売新聞 2018年 12月 19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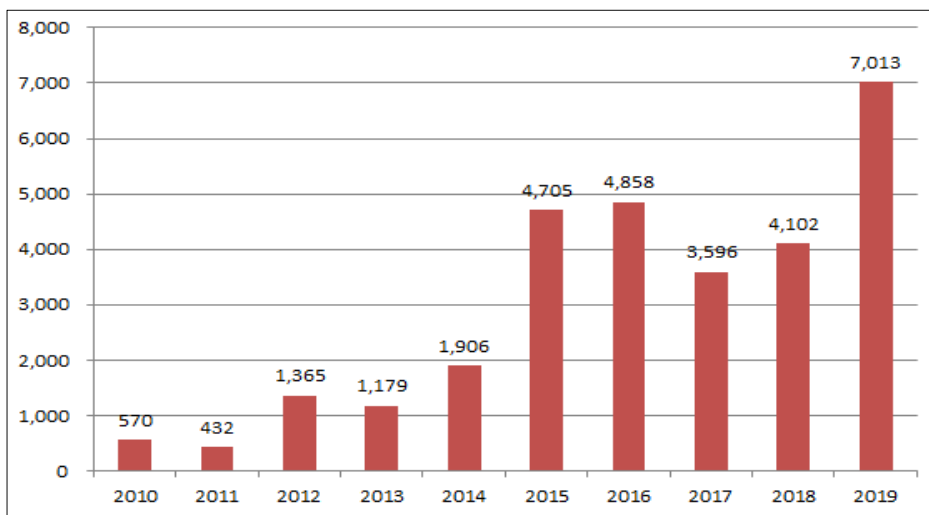
14) 佐竹知彦, 「日本:不確実性の中の日米同盟」, 『東アジア戦略概観 2018』, 防衛研究所, 2018, p. 212.

화 및 방위기술 기반의 쇠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 더욱이 고액의 장비에 대한 분할 상환으로 미래의 방위비 증가 및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이 제기됨

[그림 3] 일본 방위비 중 대외군사판매(FMS) 예산액 추이 (2009-2019)

(단위: 억엔)



자료: 丹下 綾, 「2019年度防衛関係費の概要－新防衛大綱・新中期防初年度の防衛力整備－」, 『立法と調査』, 409号, 2019. p.102.

나. 군사대국화 가능성

- 일본이 군사대국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거나, 전후 제정된 「헌법」 제9조에서 규정한 전쟁포기, 전력 불 보유, 교전권 부인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근거로 상반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유보적인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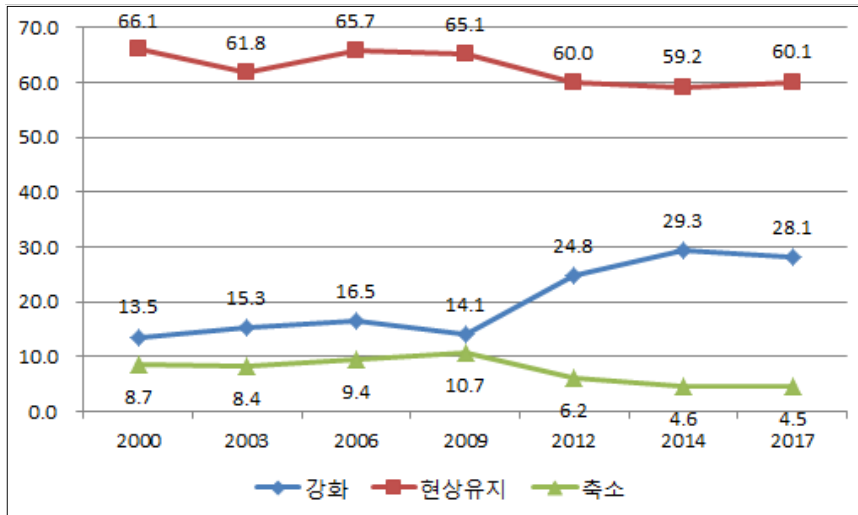
- 첫째, 군사력 관련 지표상에서 볼 때, 일본의 방위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중국 등 여타 강국과 비교할 때 방위비 지출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임
 - 2019년 미국의 GFP(Global Fire Power) 지수에 따르면, 1위 미국(0.0615), 2위 러시아(0.0639), 3위 중국(0.0673), 4위 인도(0.1053), 5위 프랑스(0.1584), 6위 일본(0.1707), 7위 한국(0.1761), 8위 영국(0.1797)순임¹⁵⁾
 - 「The Military Balance 2018」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요국의 국방비는 미국 6,028억 달러, 중국 1,505억 달러, 영국 507억 달러, 프랑스 480억 달러, 일본 460억 달러, 한국 356억 달러 등임
- 둘째, 일본의 인구구조 및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임
 - 현재 일본 전체 인구의 28.1%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2030년에는 3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보장비의 급증은 불가피함. 더욱이 재정의 32.2%를 국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주장하는 의견은 다음을 근거로 함
 - 첫째,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정부가 택하고 있는 방위정책이 평화국가로 부터의 일탈을 보이고 있음. 특히 2차 아베내각 이후 헌법해석 변경을 통하여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가 가능해졌으며, 헌법 9조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됨
 - 둘째, 일본의 방위비가 지속적 증가하고, 육해공 전력강화가 추진되고 있으

15) 미국의 GFP(Global Fire Power)는 매년 각국의 인구나 육해공군력, 경제력, 국방예산, 지리적 위치 등 55개 항목을 종합해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함. GFP의 인덱스 수치가 낮을수록 강한 것을 의미하며, 이론상 0이 가장 강한 수치가 됨

며, 2018년 말 육상자위대의 지휘체계가 일원화가 되면서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대가 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함

- 2018년 개정된 「방위대강」은 ‘일본은 평화헌법 하에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지킨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나, 현재의 일본의 방위력이 타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함

[그림 4] 자위대의 방위력에 대한 여론



자료: 자위대 방위문제에 대한 여론조사(自衛隊·防衛問題に関する世論調査)

- 참고로, 내각부가 1982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자위대 방위문제에 대한 여론조사(自衛隊·防衛問題に関する世論調査)」의 최근 10년간의 동향을 보면, 2012년 이후 방위력 강화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현재 수준의 방위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60%이상을 차지함

- 2017년 조사에 한정해서 볼 때,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82.9%,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1.5% 임. 미일동맹에 대한 의존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음
- 일본 국내의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위협인식,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정책에 대한 일본 국내 불안감 고조,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증가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일본의 방위예산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본의 인구구조, 재정상황, 방위비 증가에 대한 국내의 저항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이 군사대국을 목표로 급격히 방위력 확대를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찰됨

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 아베내각은 2014년 7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가 정비됨
- 중의원 심의과정에 참여한 헌법학자 3인은 헌법 9조가 개별적 자위권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준 유사시 자위대의 후방지원 활동이 사실상 무력행사와 일체화될 수 있다는 점, 헌법 9조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금번 안보법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음
- 또한 헌법 해석의 변경에 대해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당하는 권력이 내각의 각의 결정으로 개헌에 상응하는 해석변경을 한 것은 입헌주의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
- 아베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에 대해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

경이 객관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임에 따라 1972년 정부견해에서 헌법 제9조의 해석을 기본적인 논리는 변경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함¹⁶⁾

- PKO법 제정 시에도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많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피력함
-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8%, 사용할 필요가 없다 25%, 답할 수 없다 4%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¹⁷⁾
- 한편,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인정에 대해서는 반대 56%, 찬성 27%의 분포를 보임¹⁸⁾

라. 전수방위 원칙의 실질적 수정

- 2018년 4월 국회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아베총리 일본 방위의 기본방침인 전수방위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만을 보유한다는 것에도 변함이 없다고 확인함
- 다만, 방위장비 기술의 발전으로 공격을 받으면, 이를 피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먼저 공격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현실인식을 나타냄¹⁹⁾

16) 第189回 衆議院平和安全法制特別委員會議録 (2015年7月15日)

17) 読売新聞 2014年 5月 11日

18) 朝日新聞 2014年 4月 22日

19) 沓脱和人·丹下綾, 「専守防衛と今後の我が国の防衛政策 - 第196回国会 (常会) における防衛論議の焦点 - 」, 『立法と調査』, No. 404, 2018.

- 2018년 개정된 「방위대강」은 ‘일본은 평화헌법 하에서 전수방위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문민통제를 확보하는 동시에 비핵 3원칙을 준수하는 기본방침을 준수해왔으며 향후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2018년 개정된 「방위대강」은 실질적인 전수방위 원칙의 수정 및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외의 논란이 되고 있음²⁰⁾
- 2018년 개정된 방위대강의 최대의 쟁점은 ‘이즈모’의 항모화임. 일본 정부는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을 보유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으나, 타국의 국토를 파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병기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옴. 따라서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형 항공모함은 보유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음
- 이즈모의 항모화에 대해 일본정부는 이즈모는 ‘다기능 호위함’으로서 평소에는 헬기를 탑재하고, 유사시 항공 공격에 대한 대처, 경계감시, 훈련, 재해대처에 한정되어 전투기가 탑재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²¹⁾
- 하지만, 공격용 항모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방위 원칙의 이탈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20) 특히 이번 「방위대강」 개정이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다고 평가됨에 따라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위협을 부추기는 일본의 행보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번 방위 대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함.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 아래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21) 「中期防衛力整備計画(平成31年度～平成35年度について)」(平成30年12月18日) p.9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상대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상대의 기지 등을 선제공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 옴
- 일본 정부는 법리상 문제로서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의 유도탄 등의 기지를 타격하는 것도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음²²⁾
- 2019년 2월 아베총리는 적기지 공격에 대해서는 미일의 역할분담에서 미국의 타격력에 의존하는 것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미일간의 기본적인 역할분담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언급함²³⁾
- 2018년 개정된 「방위대강」에서 스탠드오프 미사일 정비는 적기지 공격능력이 아니라 낙도방위용으로 기술됨
- 하지만, 낙도 방위용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사용 여하에 따라서는 적기지 공격을 위한 방위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

22) 第 24 回国会衆議院内閣委員会議録第 15 号 1 頁 (1956.2.29)

23) 第198 回国会衆議院予算委員会第三分科会議録第 1 号 32 頁 (2019.2.27)

IV.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에 따른 시사점

1. 현(現) 한일안보협력 현황

- 한국과 일본은 1966년 주일 한국 무관부 및 1967년 주한 일본 무관부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안보협력을 시작함
- 한일 간 안보협력분야의 최초의 협정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이하 GSOMIA」 임
-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국가 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을 정하는 기본 틀임. 협정국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함
- 2019년 현재 한국은 22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일본은 NATO를 포함하여 8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음
 - GSOMIA는 정부 간 조약의 형태로 체결하는 경우 이외, 국방당국 간 MOU형태로 체결할 수도 있는데, 2019년 현재 우리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등 14개국과 국방당국 간 MOU형태로 GSOMIA를 체결함. 기타 터키, 체코, 스위스 등과 정부 간 협정체결을 추진 중에 있음

[표 3]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군사비밀의 보호
비밀분류	- 각국에 상응하는 동일 비밀등급 표시(한국 : 군사II급 비밀/군사III급 비밀, 일본 : 극비·특정비밀/비밀)
보호원칙	-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접근	- 군사비밀정보의 접근자격(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허가를 부여받은 정부 공무원) 충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이행
정보전달	-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해 전달
시설보안	-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하는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한 책임
보안요건	- 문서·매체, 장비, 전자전달시 보안요건 및 절차
파기	- 파기 방법 규정(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
분실 훼손	- 분실·훼손 모든 분실·훼손 가능성에 대해 제공당사국에 즉시 통지 및 상황 조사 등
분쟁해결	-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만 해결
개정	- 양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 가능
기간종료	- 1년간 유효, 협정 종료 의사를 90일 전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 2016, p.226

- 한일 간 GSOMIA는 협정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체결이 지체됨
 - 1989년 한국이 일본에 제안하였으나 무산됨. 2011년 양국 국방부 장관이 관련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2012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국내 협정 추진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로 체결직전 중단됨
- 2016년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능력과 대응태세 보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6년 11월 1일 일본 정부와 협의, 11월 4일 일본정부와 가서명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23일 국방부장관과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하여 발효됨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 23일 GSOMIA체결 이후 한일양국은 2019년 8월말 기준 총 30건의 정보를 교환함²⁴⁾
 - 구체적으로 2016년 북한의 장거리·무수단미사일/ SLBM 발사 관련 평가 등 1건, 2017년 북한 6차 핵실험 평가 및 핵개발 동향 평가·전망 등 19건, 2018년 북한 핵시설 및 미사일 개발 관련 동향 평가 등 2건, 2019년 북한 단거리 발사체발사(5.4) 등 8건이 이에 해당함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협상 종료 의사를 90일 전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GSOMIA 종료 의사를 표명, 8월 23일 일본에 통보함
-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과 한일 간 신뢰훼손·안보상 우려 체계에 따라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초래된 상황인 바, 양국 간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종료 이유를 설명함
-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GSOMIA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체제상의 염려로 대한(對韓) 수출 절차 우대조치를 엄격화한 것으로 수출규제 조치와 GSOMIA 종료는 별개라는 입장을 지속함
- 양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은 지난 8월 이후 GSOMIA 종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함
 - 11월 20일 제임스 리시(James Elroy Risch) 의원 등 미국 상원 외교위원

24) 국방부는 2019년 8월 이후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고 있음

회와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GSOMIA 종료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Reaffirming importance of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을 발의함²⁵⁾

- 이와 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22일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GSOMIA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킨다는 내용을 발표함
- 아베(安倍晋三)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GSOMIA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에 매우 중요하며,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으로 평가함²⁶⁾
- GSOMIA 체결 당시부터 종료유예 결정이 내려진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는 GSOMIA에 대한 찬반여론이 양분됨
- 2019년 8월 23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GSOMIA 종료결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4.9%, 부정적 평가는 38.4%로 나타남²⁷⁾
- 우리 정부의 2019년 8월 GSOMIA의 종료 결정 발표 이후,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논의는 한미일 안보협력 상에서의 한일 GSOMIA의 위상문제임

25) 미상원 외교위원회 <https://www.foreign.senate.gov>

26) 官邸 https://www.kantei.go.jp/jp/98_abe/actions/201911/22bura.html.

한편, 모테기(茂木敏充) 외무대신은 GSOMIA와 수출규제는 별개이며, 한국 측의 WTO제소절차 중지예 따른 관계 당국자의 대화의 추진이라는 입장을 내놓음
https://www.mofa.go.jp/mofaj/press/kaiken/kaiken4_000896.html#topic1

27) 이 조사는 전국19세 이상 성인 10,68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501명이 응답함. 4.7%의 응답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임

- GSOMIA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GSOMIA는 한미·미일 안보협력체제에서 한일을 잇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GSOMIA 종료결정이 한일협력 및 한미일 협력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지적함
 - 특히,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차원의 안보기제로서 GSOMIA를 두고 있음에 따라 GSOMIA가 종료될 경우 한미 관계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
 - 둘째,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증가하는데 반해 한국이 이를 탐지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춤. 구체적으로 한국이 16대 밖에 없는 해상초계기를 일본은 77대를 가지며, 정보수집위성 5기, 탐지거리 1,000km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음²⁸⁾
- GSOMIA 종료를 주장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한일 간의 안보협력에서 GSOMIA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종료 이후 양국의 안보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을 주장함
 - 둘째, 미일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이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강한 가운데, 북한과 통일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임
- 한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일 간 정보공유는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에 한정하여 주로 GSOMIA를 통해 이루어짐. 2017년의 경우 GSOMIA와 TISA(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 한미일정보공유약정)가 동시에 활용되었으나, GSOMIA의 활용빈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관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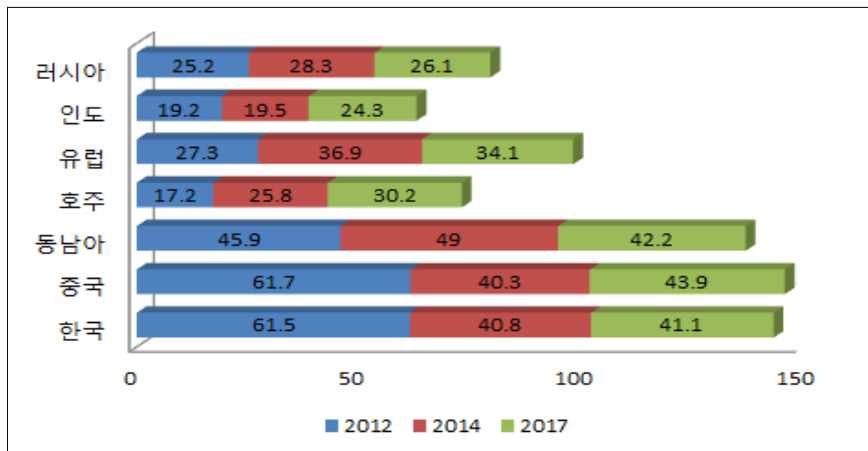
28)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일보 2016년 11월 14일)

- GSOMIA를 우회하는 TISA의 활용이 GSOMIA 종료 이후의 대안으로서 제시된 바 있음
- TISA는 GSOMIA체결 이전 일본과의 정보교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한미/미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기반으로 2014년 12월 국방 당국 간 체결한 약정으로서 미국을 경유하여 한일 간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함
- 국방부에 따르면, 14년 12월 TISA 체결 이후 한미일 국방 당국 간 회상회의를 통하여 15년 5회, 16년 13회, 17년 11회 정보공유가 이루어짐
 - 2016년 11월 GSOMIA체결 이후 한일 양국은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8건의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최근 일본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일동맹 및 다자협력을 통해 대 중국견제를 뚜렷이 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중국과의 안전보장대화 등의 교류를 추진하고, 불측(不測)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신뢰양성조치 등의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²⁹⁾
- 최근 7년 만에 해상자위대 중국 방문, 중일고위급 국방당국자 간 회의를 개최됨
- 중국과의 방위협력 강화의 요구는 여론조사에서도 뚜렷이 나타남

29) 「국가안보전략서」·「미일방위협력지침」·「방위대강」은 ‘중국의 투명성을 결여한 군사력강화, 해·공 영역 활동확대,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 등을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에서의 위협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2013년 「방위대강」의 ‘통합기동방위력’ 구축, 2018년 「방위대강」의 ‘다차원 통합방위력’ 구축도 중국의 센카쿠 열도 주변 영해침입에 대한 대응 및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견제로 분석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2018年 12月 18日

- 내각부가 실시하고 있는 「자위대 방위문제에 대한 여론조사(自衛隊防衛問題に関する世論調査)」 결과를 보면, 미국 이외 국가와 방위협력·교류를 추진할 때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의 비율이 가장 높음. 2012년과 2017년의 경우 한국보다 중국과의 방위협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아남

[그림 5] 미국 이외 방위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자료: 「자위대 방위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필자 작성

2. 시사점

-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뚜렷해지고 있는 일본의 방위역량 강화와 안보 분야에서의 역할확대, 한일안보협력의 현황과 쟁점 등에 비추어 향후 한국의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가. 향후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의 재정립

- 최근 일본의 방위비 증가, 장비의 고도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안이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우리의 안보정책 방향 및 대일안보협력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역내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안보태세의 구축 및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될 경우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세력균형을 이루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됨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일본이 평화헌법에서 벗어나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됨. 한편,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있는 7개의 유엔사령부로부터 병력, 장비 등의 보급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음
- 한편, 일각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국 영역 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2015년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 시 해당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양국 모두 인지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음

나. 일본 안보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담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한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 등에 대해 일본이 타국의 위협요인이 되지 않도록 일본의 설명책임 및 투명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일차적으로 최근 한일관계 냉각에 따라 중단된 양국 군사 당국 간 대화 채널 및 양국 간 지속되었던 군사교류 등의 복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됨
- 나아가 한일 양국 간 안보분야에서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양국의 정부 및 의회, 전문가 간 다양한 채널을 동원한 상호 이해 프로그램을 확대·심화시킬 필요가 있음
- 2019년 6월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의 공동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 75%가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북한(64%), 중국(48%), 일본(39%), 러시아(20%), 미국(20%)의 순으로 나타남
 - ◆ 일본 국민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동일조사에서 일본 응답자의 74%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일본인이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북한(78%), 중국(65%), 러시아 (54%), 미국(32%), 한국(25%)의 순임³⁰⁾
- 국회차원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된 '한일의회 미래대화'의 의제로 한일 양국의 안보정책 및 방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발족한 한일의회외교포럼 등을 통한 상시적 대화채널의 확보 등의 활동도 검토해 볼 수 있음

30) 読売新聞 2019年 6月 11日

다. 대북억지력 유지를 위한 협력 강화

- 최근 일본이 중국의 공세적인 세력 확장을 염두에 두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하에 일본의 안전보장 협력국의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여러 안보정책 문건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안보협력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에서의 한국의 안보적 중요성의 감소로 해석하고 있음. 하지만, 일본의 안보환경 인식에서 한반도가 제외된 경우는 없음. 특히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일본 안보의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서, 2011년 GSOMIA체결 불발 이후 상황에서도 일본은 2013년 「방위대강」에서 한국과의 GSOMIA 및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체결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
 - 또한 일본의 안전보장에서 일본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지속해서 한반도 정세인 만큼 일본 안보정책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낮아진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안보적 중요성은 인지하나, 이후 한일관계의 악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³¹⁾
-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아베내각과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들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초에는 차이가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양국에게 있어 공통된 위협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 이에 양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안보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31) 2017년 「자위대 방위문제에 대한 여론조사(自衛隊・防衛問題に関する世論調査)」 결과에 따르면, 일본 국민이 일본의 안전보장 면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로는 한반도정세가 68.5%로서 가장 관심이 높고, 중국의 군사력의 근대화 및 해양에서의 활동 48.6%, 국제테러조직의 활동 39.7%의 순으로 나타남

라. 일본의 과거사와 안보연계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 2019년 8월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종료의사 표명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등 과거사관련 사안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안보상의 우려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됨
-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는 갈등사안이 많고 해결이 쉽지 않으며, 점화하기 쉬운 특성을 가짐. 이에 과거사 사안에 대한 일본 측의 안보사안 연계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면서 안보 문제는 안보 논리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일본 측에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마. 안보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중층적 안보협력 방안 모색

- 최근 일본의 「평화안전법제」 성립 등으로 미일동맹이 심화되고, 미일 안보협력의 범위가 확대됨. 특히, 미일동맹의 협력범위가 우주·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고, 미래전(戰)에 대비한 미일동맹의 기술·협력 수준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역내 다양한 안보위협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 및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일본이 인도-태평양전략 하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뚜렷이 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는 별개로 중국과의 방위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한국의 안보정책 검토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줌
- 주변국과의 중층적인 안보협력을 강화함에 있어 국회차원에서는 2019년 6월

출범한 12개 의회외교포럼을 활용하여 각국 의회 간 지식·정보 및 인적네트
워드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V. 결론

- 본 보고서는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발표된 주요 안보관련 문건 및 법제의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검토결과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일본 방위비의 증가, 장비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위대의 활동지역에서 지리적인 한계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둘째, 미일동맹의 질적·양적 강화가 이루어짐
 - 「국가안전보장전략」의 발표로 일본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문서 체계와 동일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미일 간 방위협력의 지리적 제한이 없어짐
 - 영역 면에서도 육해공 등 기존의 미일전략협력 영역에 더하여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협력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동맹조정협의체의 설치를 통하여 평시부터 비상시까지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 셋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하에 일본의 안전보장 협력국의 범위가 기존 한국, 호주, 중국, 러시아 등에서부터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음
 - 넷째, 일본의 안보정책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견제가 뚜렷해지고 있는 한편, 중국과 안전보장대화 추진 등 방위협력 강화

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

-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뚜렷해지고 있는 일본의 방위역량 강화와 안보 분야에서의 역할확대 등 급변하고 있는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향후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 최근 일본의 방위역량 강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안이며, 군비경쟁 초래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으나,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후방지원 체계의 구축 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우리의 안보정책 방향 및 대일안보협력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일본 안보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담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강화가 요구됨
 - 한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의 양면적 성격을 고려하되, 이것이 타국의 위협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일본의 설명책임 및 투명성 확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최근 한일관계의 냉각에 따라 중단된 양국 군사 당국 간 대화 채널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아가 한일 양국 간 안보분야에서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양국의 정부 및 의회, 전문가 간 다양한 채널을 동원한 상호 이해 프로그램을 확대·심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국회차원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된 '한일의회 미래대화'의 의제로 한일 양국의 안보정책 및 방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발족한 한일의회외교포럼 등을 통한 상시적 대화채널의 확보 등도 검토

해 볼 수 있음

- 셋째, 한일 간 대북역지력 유지를 위한 협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일본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하에 일본의 안전 보장 협력국의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여러 안보정책 문건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안보협력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일본의 안보환경 인식에서 한반도가 제외된 경우는 없으며,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양국에게 있어 공통된 위협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 양국 간 대북정책의 기초에는 차이가 있으나, 양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안보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넷째, 일본의 과거사와 안보연계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함
 -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는 갈등사안이 많고 해결이 쉽지 않으며, 점화하기 쉬운 특성을 가짐. 이에 과거사 사안에 대한 일본 측의 안보사안 연계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면서 안보 문제는 안보 논리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일본 측에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다섯째, 안보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복합적·중층적 협력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최근 미일동맹이 심화되고, 미일 안보협력의 범위가 확대됨. 특히 미일동맹의 협력범위가 우주·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고, 미래전(戰)에 대비한 미일동맹의 기술·협력 수준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역내 다양한 안보위협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 및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층적인 안보협력을 강화함에 있어 국회차원에서는 2019년 6월 출범한 12개 의회외교포럼을 활용하여 각국 의회 간 지식·정보 및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 권태환, 「최근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한국국가전략』, 제8호, 2018.
- 박영준, 「한일갈등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미래」, 『이슈와 통찰』, Vol.12, 2019.
- _____, 「한일관계 현안과 대응방향」 『2019년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방향 및 국회의 역할』.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모음집, 2019.
- _____,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아세아연구』, 58(4), 2015.
- 박명희, 「일본 방위계획대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고려사항」,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제1547호, 2019.
- 박철희, 「한일갈등의 심화와 한일안보협력의 미래」, 『한국국가전략』, 통권 제10, 2019.
- 이기태,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과 '일본회의' : 강한 일본의 지향과 미일동맹의 구조 사이에서」, 『일본연구논총』, 제48권, 2018.
- 조양현, 「일본 신방위계획대강(2018년 12월) 평가 및 대응 방향」,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소, 2018.
- _____,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구상과 일본 외교」,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소, 2018.
- 토가시 아유미, 「정권교체와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지속성」, 『한국정당학회보』, 16(2), 2017.
- 최희식,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해양안전보장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61(4), 2018.
- 今井和昌, 丹下綾, 「統合機動防衛力から多次元統合防衛力へ—新防衛大綱・新中期防衛力整備計画の概要—」, 『立法と調査』, 409号, 2019.
- 丹下綾, 「2019年度防衛関係費の概要—新防衛大綱・新中期防初年度の防衛力整備」, 『立法と調査』, 409号, 2019.

- 今井和昌,「新防衛大綱・新中期防と防衛体制の在り方をめぐる国会論議」,
『立法と調査』, 415号, 2019.
- 佐竹知彦,「日本:不確実性の中の日米同盟」,『東アジア戦略概観 2018』,防
衛研究所, 2018.
- 沓脱和人・丹下綾,「専守防衛と今後の我が国の防衛政策―第196回国会(常
会)における防衛論議の焦点―」,『立法と調査』, 404号, 2018.
- 富樫あゆみ,『日韓安全保障協力の検証:冷戦以後の「脅威」をめぐる力学』,
亜紀書房, 2017.
- 田中明彦,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編,『日米同盟を組み直す:東アジアリスクと
安全保障改革』,東京: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7.
- 星野昭吉,『戦後の「平和国家」日本の理念と現実』,東京:同文館出版, 2017.
- 沓脱和人,「平和安全法制成立後の防衛論議―日米同盟の強化のための取組と
在日米軍の駐留に係る諸課題―」,『立法と調査』, 379号, 2016.
- 山本健太郎,「戦後日本の安全保障法制の展開と世論」,『レファレンス』 No.
783, 2016.
- 等雄一郎,「日米関係から見た集団的自衛権論議―日米防衛協力の進展と集団
的自衛権―」,『レファレンス』, No.770, 2015.

『防衛白書(2019)』

<https://www.mod.go.jp/j/publication/wp/>

「国家安全保障戦略」

<https://www.cas.go.jp/jp/siryoku/131217anzenhoshou/gaiyou.html>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

<https://www.mod.go.jp/j/approach/anpo/shishin/>

「平成31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中期防衛力整備計画(平成31年度～平成35年度)について」

<https://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9/>

입법·정책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001호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2018.03.13.	허석재
제002호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2018.05.31.	정도영 김민창 김재환
제003호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	2018.06.22.	문은희
제004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8.06.28.	류영아
제005호	현행 지방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 및 개편방안 : 지방의회선거를 중심으로	2018.07.11.	김종갑
제006호	디지털 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과제 : 전문법칙을 중심으로	2018.07.26.	조서연
제007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2018.08.08.	조주은 최진응
제008호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2018.09.21.	허민숙
제009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2018.11.15	김재환 정도영 김민창
제010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2018.11.29	김유향 김나정
제011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8.11.29	신동윤
제012호	연구개발특구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8.12.07.	권성훈
제013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개선 과제	2018.12.10.	김태엽
제014호	현행 '복지허브화' 정책의 성과 및 개선방안 -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	2018.12.11.	이만우
제015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2018.12.13.	박선권
제016호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2018.12.13.	정준화
제017호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2018.12.14.	김현정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018호	국가 주요 시설물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2018.12.14.	김진수
제019호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018.12.17.	허민숙
제020호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 및 쟁점	2018.12.19.	김도희
제021호	개정 한·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와 향후 과제	2018.12.20.	정민정
제022호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입증책임 전환을 중심으로-	2018.12.24.	박재영
제023호	시진핑 집권2기 중국 대외정책 결정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2018.12.27.	김예경
제024호	난민심사제도 운용실태 및 개선과제	2018.12.27.	백상준 김예경
제025호	남북 이산가족 관련 지원 정책의 실태 및 개선과제	2018.12.31.	이승현
제026호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현황 및 개선과제	2019.01.18.	김창호
제027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9.09.24.	류영아
제028호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2019.10.31.	박선권
제029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2019.11.01.	최미경 최정민
제030호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2019.11.15.	장은덕
제031호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2019.12.10	김진수
제032호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19.12.16	박재영
제033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의 점검 및 개선방안	2019. 12. 19.	김은진
제034호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19. 12. 23.	김유향 유지연 김나정
제035호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2019. 12. 24.	김영석 박준환 김대명
제036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2019. 12. 26.	이혜경
제037호	도로 유지관리 현황 및 과제 - 도로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2019. 12. 26.	구세주
제038호	형사 사건관계인의 알권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19. 12. 27.	백상준

입법 · 정책보고서 Vol. 제39호

발 간 일 2019년 12월 27일
발 행 김하중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788 · 4730
인 쇄 성지문화사 (TEL 02 · 2273 · 5090)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586-5668
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01602-14

© 국회입법조사처, 2019



입법·정책보고서

주요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주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NARS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 788. 4510(代) www.nars.go.kr

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01602-14
ISSN 2586-5668



국회입법조사처